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0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성일종·서범수·김승수

송석준 • 이종배 • 박덕흠

서지영 · 정점식 · 고동진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인 상황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고,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것 임(안 제19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자녀가 1명인 경우: 12개월
-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 용하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 2025년 1 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자녀-----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1. 자녀가 1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 2개월에 1자녀를 초과하는 자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 개월 수 월 수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